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87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안태준 · 문진석 · 정준호
조정식 · 김영진 · 이연희
전용기 · 윤종균 · 이정문
김정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빈집정비 관련 법률은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농어촌정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한편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매년 이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빈집정비계획 외에 이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양 법률 간 빈집관리기준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최근 정부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법상 빈집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시장·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주민으로부터 의견청취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에 기

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제4조제5항에”를 “제4조제6항에”로 한다.

제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한다.

⑤ 시장·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 의견청취 및 정보제공 요청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1호 중 “제8조제4항을”을 “제8조제5항을”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빈집밀집구역”이란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u>제4조제5항에</u> 따라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9. (생 략) ② (생 략)	제2조(정의)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 ----- ----- <u>제4조제6항에</u> -----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u><신 설></u> ⑤ (생 략) ⑥ <u>제5항에</u>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⑧ (생 략)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시장 · 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u> <u>⑥ (현행 제5항과 같음)</u> <u>⑦ 제6항에</u> ----- ----- -----. <u>⑧ · 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u>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 ② (생 략)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 ⑤ (생 략)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 2. ~ 6. (생 략)	③ 시장·군수등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 의견청취 및 정보제공 요청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60조(벌칙) ----- ----- ----- -----. 1. 제8조제5항을----- ----- ----- 2. ~ 6. (현행과 같음)
---	--